

1993. 11.

光州直轄市西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運 營 委 員 會

光州直轄市西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1993年 11月

運 營 委 員 會

1. 審查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3 年 9 月 24 日
- 나. 提出者 : 光州直轄市 西區議會 運營委員長
- 다. 回附日字 : 1993 年 10 月 6 日
- 라. 最初上程日字 : 1993 年 10 月 6 日
- 마. 開催回數 및 日數 : 1 回 (93. 10. 6.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西區議會 運營委員長 鄭在洙)

가. 提案理由

광주직할시 서구 실과 직제 규칙중 규칙 개정으로 광주직할시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함

나. 改正 主要骨子

-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중 지적과를 도시건설위원회소관으로 변경하고 도시건설

위원회소관인 토지관리과를 삭제(폐지)하고 도시개발과를 대치(신설)함

○ 개정후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과

- 총무위원회 : 문화공보실, 기획감사실, 총무과, 시민과, 회계과, 세무과
민방위과
- 사회산업위원회 : 현행과 같음
- 도시건설위원회 : 도시개발과, 건축과, 건설과, 지역교통과, 지적과
- 운영위원회 : 현행과 같음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專門委員 : 李鈺來)

- 현행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두되 시.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.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.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
- 지방화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지방단위조직 개편에 따른 시본청 부서와의 연계성을 유지키 위한 조례개정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.

4. 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要旨 : 없음

6. 審査結果 : 원안 가결

7. 小數意見의 要旨 : 없 음

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

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총무위원회

○ 문화공보실, 기획감사실, 총무과, 시민과, 회계과, 세무과,

건강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

3. 도시건설위원회

○ 도식개발과, 건축과, 건설과, 지역교통과, 지적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92. 4. 3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3조 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총무위원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공보실 · 기획감사실 · 총무과 시민과 · 회계과 · 세무과 · <u>지적과</u> 민방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<p>3. 도시건설위원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토지관리과</u> · 지역교통과 · 건축과 건설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	<p>제3조 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총무위원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공보실 · 기획감사실 · 총무과 시민과 · 회계과 · 세무과 · 민방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<p>3. 도시건설위원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도시개발과</u> · 지역교통과 · 건축과 건설과 · <u>지적과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